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5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연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1	2203602	주호영의원	2024. 9. 3.	2024. 11. 14.
2	2207556	안상훈의원	2025. 1. 15.	2025. 2. 18.
3	2209086	한지아의원	2025. 3. 19.	2025. 8. 18.
4	2218404	전진숙의원	2026. 4. 17.	2026. 9. 11.
5	2218942	이수진의원	2026. 5. 13.	

나.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되, 1번·3번 및 4번의 법률안 3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되, 2번 및 5번의 법률안 2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번·3번 및 4번의 법률안 3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함.

□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	상정	소위심사
2207556	안상훈의원	2025. 1. 15.	2025. 2. 18.	2026. 9. 15.
2218942	이수진의원	2026. 5. 13.	2026. 9. 11.	

□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하여 계류하는 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	상정	소위심사
2203602	주호영의원	2024. 9. 3.	2024. 11. 14.	2026. 9. 15.
2209086	한지아의원	2025. 3. 19.	2025. 8. 18.	
2218404	전진숙의원	2026. 4. 17.	2026. 9. 11.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선정기준액”을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으로, “적용기간”을 “적용기간과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요건”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역사적 이주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는 제2항에 따른 동의로 본다.

제11조제1항 중 “소득ㆍ재산”을 “소득ㆍ재산(국외에서 얻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득ㆍ재산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그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
2.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얻은 자료 또는 정보
3.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장애인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역사적 이주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적용기간과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요건----------.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② (생 략)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

	금 수급희망자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는 제2항에 따른 동의로 본다.
③·④ (생 략)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소득·재산(국외에서 얻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을 포함한다)----------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그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 2.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얻은 자료 또

	는 정보 3.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장애인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